



제18-0357호

재발급번호-01

안전인증서

(주)가스디엔에이

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93번길 101(원창동)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Gas Detector

형식 · 모델 / 용량 · 등급 / 인증번호

형식·모델	용량 · 등급	인증번호
DA-800	DC 20~30V, 500mA Ex tD A21 IP6X T85℃	18-GA2BO-0357X

인증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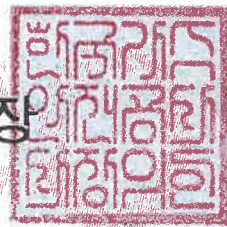
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54호)

인증조건

Tamb : -30 ℃ ~ +60 ℃, 뒷면 인증조건 참조

2018년 06월 25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



인 증 조 건

1. 제조공장

- “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93번길 101(원창동), (주)가스디엔에이” 에서 생산하는 인증범위의 제품에 한함.

2. 제품개요

- 본 Gas Detector는 폭발성 분진, 공기 혼합물 또는 분진 층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밖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GROUP A 에 속하는 것으로서 21종 위험장소 및 22종 위험장소에서 사용됨.

3. 인증범위

- 본 인증서에 기재된 형식·모델·용량·등급 란에 표시된 제품에 한하여 유효함.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- 가. $-30^{\circ}\text{C} \leq T_{\text{amb}} \leq +60^{\circ}\text{C}$ (“X” 조건)
- 나. 인증받은 케이블글랜드 및 실링핏팅을 사용하여 IP등급을 유지할 것 (“X”조건)
- 다. 그 밖의 주의사항은 사용설명서 참조

5. 인증(변경)사항

- 주소지 이전 : “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-B 602(청천동,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)” 에서
“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93번길 101(원창동)” 으로 주소지 이전함. ‘19.07.10. 신기호

6. 그 밖의 사항

-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

